

#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9호  
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 
그러나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라

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

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'일정기간'을 정하여,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